

#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유럽연합 및 주요국 정책 동향

■ 김 희 연\*

## 1. 개 요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7월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정보 재활용의 초기단계에 있는 회원국을 돕고, 2015년 7월까지 회원국들이 개정·발효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의 법제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공공정보 재활용 관련 정책 현황과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의 공공정보재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 2. 공공정보 재활용 관련 정책 현황

### (1) 주요국 추진 현황

공공정보 재활용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관련 정책이 추진중이다.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전문연구원, (043)531-4332, kimhy@kisd.re.kr

유럽연합은 2003년 11월,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2003/98/EC)’을 발표하여, 회원국의 관련 법제 제정을 권고한 이후 공공정보 재활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EU기구와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Open Data Strategy’를 수립하였고, 2013년 6월에는 공공정보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2003년의 지침을 개정·발효(DIRECTIVE 2013/37/EU)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폭을 확장하였다.

2011년 9월에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이 미국, 영국 등 8개국을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현재는 64개국이 참여하여 공공정보의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3년 6월에 G8은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오픈 데이터의 다플트화,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데이터 제공, 누구나 가능한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공개, 혁신을 위한 데이터 공개라는 5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은 2007년의 오픈정부법으로의 개정에서 비밀이 아닌 공개가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목적임을 확립하고, 정부계약에 의해 제3자가 보유중인 정보의 공개도 명시하는 등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투명성, 참여, 협력의 원칙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메모랜덤(The President’s 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을 발표하면서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에는 ‘열린 정부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기관들이 정보를 오픈포맷으로 온라인에 공개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1. 2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12. 8). 또한 2013년 5월에 ‘오픈 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의 도입을 천명한 이후, 2014년 5월에 정부 거버넌스 혁신과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한 ‘오픈데이터 실행계획(Open Data Action Plan)’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공공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EU의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에 따라 2005년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2012년 6월의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보완하고 효율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오픈 데이터 전략 2014~2016(Open Data Strategy 2014~2016)’을 2014년 7월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앞서 소개한 ‘Open Data Charter’의 5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 (2) EU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라이선스, 데이터셋, 요금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조건 없이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표시와 같이 단순한 고지만으로 충분한 것은 라이선스를 부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하다면 오픈 라이선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한 고지만으로 불충분하거나 법적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이용자의 창의성과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의 속성 정보 표시 정도의 라이선스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재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처음부터 개인정보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규정을 두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를 오픈 라이선스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수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셋과 관련하여서는 원본을 온라인으로, 완벽한 형태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메타데이터와 함께 공개하는 것 등을 이용촉진을 위한 공개 조건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데이터셋 사례를 명시하였다.

〈표 1〉 5대 분야 데이터셋 사례

구분	데이터셋 사례
지리정보 데이터	우편번호, 지도 등
지구 및 환경 데이터	날씨, 수질, 에너지 소비 등
교통 데이터	대중교통 일정표, 도로공사, 교통정보 등
통계	인구 및 경제 지표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통계
기업 데이터	등록 기업 리스트, 대차대조표 등

마지막으로 요금부과와 관련하여, 디지털 문서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해당 문서의 재생산·제공·배포에 소요되는 한계비용 이상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원가보상 방법과 요금 계산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3. 결 어

주요국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추진중이며, 그 방향성은 공공정보 원문의 전면 개방이라는 능동적 개방으로의 전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담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그리고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에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추진 등으로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으므로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법령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더불어 라이선스, 요금부과,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와 관련된 시간, 노력, 재원의 조달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통계처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의 제공 등 진정한 공유와 협업을 이루기 위해 이용자의 관점,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EC (2014. 7). *Guidelines on recommended standard license, datasets and charging for the re-use of documents*,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news/commission-notice-guidelines-recommended-standard-licences-datasets-and-charging-re-use>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9. 1. 21)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Washington, DC.
- 
- (2009. 12. 8)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pen Government Directive*, Washington, DC.
- 
- (2013. 5. 9)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pen Data Policy-Managing Information as an Asset*, Washington, DC.
- G8 (2013. 6).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data-charter/g8-open-data-charter-and-technical-annex>
- OGP 홈페이지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 UK (2014. 7). *Opendata strategy 2014-20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30382/bis-14-946-open-data-strategy-2014-2016.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30382/bis-14-946-open-data-strategy-2014-2016.pdf)